

법령과 고시

노동부고시 제1992-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이 결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고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 협회와 관련없는 사업종류는 생략하고 건설업 관련 9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000분율)

일반건설공사(갑)	40
일반건설공사(을)	74
중건설공사	57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69

시행시기는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문의 전화는 노동부 보험징수과 503-9763번이다.

노동부고시 제1992-54호

1993년도 건설공사노무 비율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하되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시행령 제 5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다. 시행시기는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노무비율

- 일반건설공사(갑) : 총공사금액의 29%
- 일반건설공사(을) : 총공사금액의 21%
- 중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6%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29%

※ 다만,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400. 일반건설공사(갑) ($\frac{40}{1,000}$)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해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 총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1 중 건설공사,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03 일반건설공사(을)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0001 건축건설 공 사	<p>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내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방수공사 ·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 건물내의 아이스 스케이팅설비에 관한 공사 ·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전문 제공사 ◦ 교량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교량의 보수공사 - 선박의 건설공사 -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교량의 시설공사
--	--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40002 도로신설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 -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터널공사와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신설 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심전지 푸울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40101) 세목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집,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40004 기타건설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기설 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포함)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담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랫폼 등의 포장공사(사리산포, 잔디부치기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하천의 연제, 제방수문, 통문, 갑문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흡관, 지중선, 강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고선교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 산세정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분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세목 90508 각급 사무소에 분류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색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

403. 일반건설공사(을) (74 / 1,000)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 ※ 총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 401 중건설공사,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0301. 기계장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보일러 연도의 온도 및 매연 정도 측정

법령과 고시

건설부공고 제1992-161호

해외건설업면허 실시요령

'93년부터
해외건설업면허가
수시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신규 해외건설업 면허신청 업체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면허 신청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작성요령을 게재하오
니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
는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허대상업종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건설용역업, 해외공사수주업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93년 1월 1일 이후 수시
-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건설부 해외협력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4동 523호) 전화 : 503-7396~7
-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위장소에서 연중수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교부 및 접수 (단, 우편으로는 불가)

3.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신청일전 10일 이내에 발행한 것일 것)

-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임임원)의 신분증명서 1매
- 나)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매
- 다)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1매
- 라) 기술능력 보유조서 1매
- 마) 업종별 신청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매

4. 신청자격

해외건설촉진법 제 9조에 의한 해외건설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업종별 국내관련 면허를 가진 자.

업종별

종합건설업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와 전기 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유선 통신기계공사업, 유선통신선로공사업, 전송통신공사업 중 1개이상 허가취득자

일반건설업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

특수공사업
건설업법에 의한 철강재 설치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종 설비계열 면허소지자

조경공사업
건설업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종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통신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유선통신기계공사업이나 유선통신선로 공사업 또는 전송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건설용역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산업설비용역업이나 종합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중 기계, 전기, 통신, 건설, 건축설비분야 등록자 이거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해외공사수주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지정된 종합무역상사로서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자

5. 기업진단서

면허 신청자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 4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기준일 : 신청일 현재)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 해외협력과로 제출하기 바람.

6. 수수료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00원의 수수료를 정부 수입인지로 신청서 뒷면에 첨부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 해외협력과(503-7396 ~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업 면허기준

1. 면허기준(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영업의종류	기술능력	자본금또는출자액
종합건설업	1.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50억원

	2.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3. 기계분야 기술자격취득자 5인과 산업설비설치공사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5인 4.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5. 통신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위의 각호에는 1급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을 포함하여야 함)	
일반건설업	1.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2.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위의 각호에는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을 포함하여야 함)	20억원
특수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격취득자 5인과 산업설비설치 공사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인(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을 포함하여야 함)	20억원
조경공사업	국토개발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을 포함하여야 함)	7억5천만원
전기공사업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을 포함하여야 함)	1억원
전기통신공사업	통신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을 포함하여야 함)	1억원
건설용역업	건축사 5인 또는 해외건설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5인	1억원
해외공사수주업	해외건설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8인과 건축사 2인(법 제 7조 제 1항 제 2호에 규정된 자는 위의 기준의 1/2)	20억원

① 기술능력

- 가. 위 표중 기술자격 취득자라 함은 국가 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기술계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 나. 위 표중 "산업설비설치 공사업과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금속, 화공, 에너지, 환경관리, 교통 기타 특수공사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말한다.

② 자본금

- 가. 주식회사의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으로 한다.

- 나.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자본금보다 클 때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그 자본금으로 한다.
- 다. 해외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면허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인정받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않으며, 2이상의 업종을 신규 면허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건설용역업	1. 법 제 2조 제 2호에 정한 용역 2. 1의 용역을 포함하는 일괄 발주공사의 수주 및 하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해외공사수주업	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서 정한 공사와 용역의 수주 및 하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해외 건설업 면허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별 편철순서

2. 영업의 내용

영업의종류	영업의내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 포장공사, 항만건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전기통신 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 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전기통신공사 6. 1내지 5의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 포장공사, 항만건설공사 2. 건축공사 3. 1 및 2의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특수공사업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 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 시설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2. 1의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조경공사업	1. 조경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2. 1의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2. 1의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
전기통신공사업	1. 전기통신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2. 1의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1. 유의사항

- 가. 접수기간 : 1993. 1. 1이후 수시(근무시간내)
- 나. 접수장소 : 건설부 해외협력과(503-739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 523호
- 다. 신청대상 면허
(1) 종합건설업 (2) 일반건설업
(3) 특수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전기공사업 (6) 전기통신공사업
(7) 건설용역업 (8) 해외공사수주업
- 라. 신청수수료 3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신청서 뒷면에 첨부
- 마.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 해외협력과로 제출(기업진단 기준일 : 신청일 현재)

2. 구비서류별 편철순서

아래 구비서류 순으로 목차를 만들어 신청서 뒷면에 편철하고, 목차번호를 견출지에 써넣고 견출지를 해당 구비서류 우측에 붙인다.

- (1) 해외건설업 면허신청서
- (2) 목차(첨부서류)
- (3)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4) 대표자 및 상임임원의 신원증명서(위 3항 명단 순서대로)
- (5)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6)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 (7) 기술능력 보유조서
- (8) 공고문중 업종별 신청자격이 있는 자임

- 을 증명하는 서류
(9) 기타 서류 : 대표자 이력서

해외 건설업 면허신청 구비서류 작성요령

1.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전 10일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할 것.

- (1) 해외건설업 면허신청서(별지1)
- 공고내용과 해외건설업 면허기준을 먼저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할 것
 - 대표자 :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말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 신청서 하단여백에 성명(한글, 한자)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 신청업종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업종 기재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면허일 및 번호 : 종합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중 업종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국내관련 면허, 허가업종과 날짜, 번호를 신청서 하단 여백에 모두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외건설업 면허신청과 관련없는 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예 : 일반건설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건업만 기재하면 됨)
 - 기술능력 : 기술능력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1, 2급을 말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자의 분야별 등급별 숫자를 기재할 것(예, 토목 : 기술사 1, 기사 1급 5, 기사 2급 10)
 - 자본금 : 등기부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액을 기재할 것.
 - 신청인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모두 기명 날인해야 함.
 - 도급한도액 : 신청일 현재 유효한 도급한도액
- (2) 목차
(3) 대표자 및 임원명단(별지 2)
- 임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이사, 합자회사 또는 합병회사 - 무한책임사원
- (4)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구, 시, 읍, 면장 발행)

- (3) 호의 명단 순서대로 편철
(5)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발행)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이사는 해당란에 적색으로 밑줄을 그을 것(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자본금 합산 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명시)
- (6) 대차대조표는 직전 회계년도의 것일것.
(7) 기술능력 보유조서(별지3)
별지 3양식에 의거 기술자 보유현황 및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기재된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갱신등록란을 반드시 함께 복사할 것)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전기 및 통신분야 기술자는 갑근세 납세필증)을 기술자명단 순서대로 철할 것.
(8) 업종별 신청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신청업종에 해당되는 국내면허(허가, 등록)증 및 수첩사본을 제출하되 공사실적, 처벌사항, 변경사항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면허증 및 수첩원본은 신청서 접수시 지참하여 사본과 대조, 확인 받을 것.
(9) 기타서류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1.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납입자본금의 1/1,000)을 매입하여야 함.
 2.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해외건설협회 회원이 되며(해외건설촉진법 제 32조 제 4항) 회원이 된 자는 해외건설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통상회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 입 회 비 : 면허업종에 따라 800 - 3,500만원
통상회비 : 당해년도 해외공사 기성액의 10,000분의 4
년 회 비 : 일반회원 200만원, 특별회원(건설용역업) 100만원
(통상회비가 년회비를 초과할시 면제)

(별지 1) 해외건설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대표자	한글 한자	(인)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상호				
신청업종	영업소소재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면허일 및 번호	19	제 호	도 한도액
자본금 (출자액) 또는 재산			기술능력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인)

건설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3만원 상당 수입인지 첨부 (후면에 첨부)
-----	-------------------------------

1. 신청인(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임임원)의
신원증명서 1매
2.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매
3. 영업용자산의 명세서(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1매
4. 기술능력 보유조서 1매
5. 법 제 5조 제 2항 각호의 1 또는 법 제 7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매

이 신청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별지 2)

대표자 및 임원명단

직성일 : 199
작성자 : (인)

상호 :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직위 :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등(등기부에 등재된 자에 한함)

(별지 3)

기술능력 보유조사

작성일 : 199 (인)
작성자 :

1. 보유현황

(단위 : 명)

기술분야	등급	계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건축사
(예) 토목 건축						

* 기술자 총보유인원 기재

2. 기술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목	등급	입사년월일 (근속기간)	비고

* 면허업종에 따른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상을 기재하고 기재인원에 대하여는 기술자 자격시험 시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첨부(다만, 전기 및 통신분야 기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감근세 납세필증을 첨부)

(별지 4)

대표자 이력서

작성일 :

사건	상 호	사무실전화			
	영업소소재지				
	성 명	(인)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경력사항	주				
지역사항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비고	* 면허(자격) 취득, 상벌, 취미, 특기사항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기준

건설부는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반업체의 경중과 공중에 끼친 위해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등 제재처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재처분때 영업정지기간·과징금등을 가감하는 사유 및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같은 새 기준은 건설부가 작년 9월 확정된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난 85년 10월 도입시행된 과징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제재와 합리적인 업체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류결정기준을 6개유형으로 구분 △부실시공으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거나 △시공능력상실 △세체납에 따른 관련기관 제재처분요구 △과징금처분후 6개월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부과된 과징금체납 △과징금처분을 원하지 않는 처분대상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대상업체가 경영상태악화로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을 빚거나 소속 근로자 실직 또는 휴직등의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과징금산정때에는 제3자에게 끼친 피해 및 사회적 지탄여부등 위반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8분의 1을 감산 또는 가산하고 위반건수가 2건이하는 감산, 5건이상일 땐 가산키로 했다.

건설부는 영업정지기간은 과징금산정기준으로 정한 가감사유에 해당될 경우 1개월씩 감산 또는 가산하되 가감기간이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2분의 1만 가감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과태료는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2회이상일때 해당금액의 6분의 1을 가산키로 했다.

건설부는 새 기준제정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온 과징금제 활용지침을 폐지했다.

건설부가 과징금제 도입이후 지난 86년부터 작년말까지 처분한 제재건수는 총122건인데 이

중 과징금부과가 115건(10억7천700만원)인데 반해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다.

건설부가 제정한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기준내용(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법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영업정지기간 또는 부과금액의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제재처분과 건설업체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근거

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제3항

3. 적용범위

가. 처분의 종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나. 관련법령

건설업법 제50조, 제52조 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6조

4.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처분은 원칙적으로 건설업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가·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산사유

- 1) 처분회수 :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을때
- 2) 위반동기 : 과실이 없고, 법규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3) 위반내용 :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을때
- 4) 위반건수 :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일때

나. 가산사유

- 1) 처분회수 :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때
- 2) 위반동기 : 당해 업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
- 3) 위반내용 :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인

명피해를 야기하였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때

- 4) 위반건수 :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건수가 5건이상일때

다. 감산 또는 가산의 율

감산 또는 가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8씩 감산 또는 가산한다.

라. 과징금 산정

- 1) 과징금 처분사유가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행령 별표6 나호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률은 백분율(%)로 계산하여 소수점 3자리 이하 숫자는 떼어버린다.
- 2) 과징금 산정에 있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떼어버린다.

5.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건설업법시행령 별표6에 정한 기간으로 결정하고, 가·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감산사유 및 가산사유

과징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나. 감산 또는 가산하는 기간

감산 또는 가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6에 정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산 또는 가산한다. 다만, 감산 또는 가산하는 기간이 시행령 별표 6에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감산 또는 가산한다.

6. 제재처분의 종류 결정기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의 종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할 경우 처분대상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가 있거나, 대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실직 또는 휴직등의 우려가 있을때, 단 나항 6)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업정지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1) 처분대상업체가 공사시공능력을 현저히 상

- 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처분대상업체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과징금처분을 받은 후 6월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4)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간으로부터 영업정지요구가 있는 때
 - 6) 법 제5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중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때

다. 과징금의 예납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후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구좌에 예납하게 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산정기준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7에 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가·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감산사유

- 1) 처분회수 : 최근 3년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 2) 위반동기 : 과실이 없고, 법규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3) 위반행위내용 :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나. 가산사유

- 1) 처분회수 : 최근 3년이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2회이상일 때
- 2) 위반동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반한 때
- 3) 위반행위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다 중대한 위반행위가 은폐·조작되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친 때

다. 감산 또는 가산의 율

감산 또는 가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7에 정한 금액의 1/6씩 감산 또는 가산한다.

부 칙

- 1) 이 기준은 199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기준 시행전에 적용하던 '과징금제 활용 계획'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재해없는 산업사회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30조)

-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도급형태와 위험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 사용토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30조 제2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방법 및 내용은 공사종류별, 규모별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제91-5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이 고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물중 신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냉장식 전기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냉매(물·얼음 또는 포접화합물과 공용염등의 상변화 물질)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심야시간이외에 의 시간(이하 “기타시간”이라 한다)에 냉방에 이용하는 설비로서 이러한 냉열을 저장하는 설비(이하 “축열조”라 한다). 냉동기·브라인펌프·냉각수펌프 또는 냉각탑 등의 부대설비(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열조 2차측 설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빙축열식 냉방설비
- 나. 수축열식 냉방설비
- 다. 잠열축열식 냉방설비

2. “빙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3. “수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4. “잠열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용염(eutectic salt) 등의 상변화 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5. “심야시간”이라 함은 22:00부터 익일 08:00까지를 말한다.

6. “2차측설비”라 함은 저장된 냉열을 냉방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동되는 냉수순환펌프·공조용순환펌프등의 설비를 말한다.

7. “전체냉방식”이라 함은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전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

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8. “부분축냉방식”이라 함은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일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9. “축열율”이라 함은 통계적으로 년중 최대 냉방부하를 갖는 날을 기준으로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text{축열율}(\%) = \frac{\text{“이용이 가능한 냉열량(kcal)”}}{\text{“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kcal)”}} \times 100$$

10.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라 함은 축열조에 저장된 냉열량중에서 열손실등을 차감하고 실제로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
11.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라 함은 가스(유류포함)를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를 말한다.

제 2 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제 4 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최대냉방부하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또는 연구소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텔 또는 병원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4.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제 5 조(냉방설비의 축열율)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때에는 전체 축냉방식 또는 축열율이 40%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축냉식전기냉방설비의 설계기준

제 6 조(냉동기) ①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냉동기의 용량은 제4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부분축냉방식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축냉운전과 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의 동시운전이 반복전으로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7 조(축열조) ①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전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재질의 축냉재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 청소가 용이하고 부식이 안되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방청 및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축열조의 용량은 제5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축열조는 내부 또는 외부의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축열조를 여러 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 또는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축열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해야 하며, 맨홀등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열교환기) ①열교환기는 시간당 최대 냉방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교환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축냉운전·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를 동시에 이용하여 냉방운전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시기능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0 조(냉방설비에 대한 운전실적점검) 냉방용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년중 1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기관등으로 하여금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운전실적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축냉식 전기냉방기기) ①“축냉식 전기냉방기기”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한후 기타시간에만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소용량의 축냉식 냉방기기로서 이동형 냉방기 및 고정형 팩키지에어콘등을 말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에 대하여도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소용되는 최대냉방부하의 60%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제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가 수용할 수 있는 냉방용량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최대냉방부하의 10%를 초과해

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적용제외) 동력자원부장관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에 관한 국산화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정한 것 이외에 이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령과 고시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3-9호

'93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융자지침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6항 및 동력자원부 고시 제92-119('92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관리요령 : 93. 1. 4)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에 지원되는 석유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력자원부는 세부융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1. 목적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적용범위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기금의 융자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석유사업기금 운용관리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융자대상자

(가) 공급자 배관망 사업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다만, 수도권지역 소재 일반도시가

스 사업자중 「도시가스회사에 추가로 인정한 투자재원의 투자이행 조치내역('92. 6. 26)」을 위반한 업체는 제외함.

[나] 가스냉방 보급사업

가스냉방시설 설치건물주 또는 시공업자. 다만,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여신금지부문 업종은 제외하되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로 함.

4. 용자액

- 공급자 배관망 사업 : 111억원
- 「'93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관리요령」이 수정되어 각 사업별 용자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용자액으로 봄

5. 기금의 용도

[가] 공급자 배관망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공사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의 설치비

[나] 가스냉방 보급사업

건물의 냉방을 위한 가스냉방시설(냉·온수기를 포함하여 냉각탑, 냉온수 및 냉각수 순환 펌프, 가스보일러 및 가스배관을 말한다)의 설치비

6. 용자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7. 용자조건

구분	공급자 배관망 사업	가스냉방 보급사업
용자비율	시설설치비의 50% 이내	가스냉방시설 구입·설치비의 90% 이내
용자한도	사업자당 10억원 이내	동일건물(동일냉방시스템 적용건물)에 대한 용자는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자율	연리5%(대여금리4%) 단, 연체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설자금 대출시 연체 이자율에 따름	연리 5%(대여금리 4%)
대출기간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8. 용자절차

[가] 공급자 배관망 사업

(1) 동력자원부장관은 권역별 기금용자액과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하여 시·도지사 및 협회에 통보

- ㉠ 권역별 기금용자액 : LNG권역 33억원, 비LNG권역 78억원
'93년 하반기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중부천(대전, 청주, 천안)은 비LNG권역에 포함.
- ㉡ 기금지원 대상사업

지역	기금지원 대상시설
수도권소재 도시가스사업자	가정용배관(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연립주택·빌라의 제외)
직할시소재 도시가스사업자	가정용배관(공동주택 포함)
기타지역소재 도시가스사업자	간선배관망 및 가정용배관

(2) 협회는 당해년도 시설투자소요액 및 관할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도시가스 회사의 배관투자 의무화조치 위반사항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기금용자액을 배정후 시·도지사 및 사업자에게 통보

- '92 석유사업기금 용자지침을 위반한 대구도시가스(주) 및 (주)해양도시가스에 대해서는 '



93 배정예정액에서 '92 위반사용액을 차감하여 배정

(3)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투자 계획에 대하여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적합여부 및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별 기금용자 대상 시설을 선정(기금용자 배정액의 130% 범위내)하여 협회 및 사업자에 통보

- 다만, 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회사에 추가로 인정한 투자재원 도시가스사업자의 '92년도중 투자재원의 투자이행조치 실태에 대하여 결산보고서등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93. 4. 30까지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가능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등 도시가스 공급소외지역의 공급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되도록 배려

(5)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기금용자 대상시설에 대하여 용자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6)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 기관에 용자신청

- 협회추천서
- 시·도지사의 공사계획 승인서 또는 검사필증
- 시공계약서 및 견적서

(7) 용자취급기관은 시설공사의 공정단계별로 소정의 확인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 필증)를 거쳐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날에 지급하여야 함

(8) 용자취급기관은 기금의 용자상황을 익월 7일까지 공사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사는 기금의 대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동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가스냉방 보급사업

(1) 가스냉방시설 설치건물주 또는 시공업자는 가스냉방시설을 설치한 후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취급은행에 용자를 신청하여야 함

- 가스냉방시설 구입·설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시가스 공급계획 확인서(도시가스사업자 발급)

- 시공계약서 및 건물주의 가스냉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시공업자의 경우에 한함)

(2) 취급은행은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공사에 자금한도를 확인받은후 대여를 요청하여야 함

(3) 용자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날에 지급하여야 함

(4) 용자취급기관은 기금의 용자상황을 익월 7일까지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기금의 대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동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9. 용자금의 사후관리

(가) 공금자 배관망 사업

(1) 시·도지사 및 용자취급기관은 용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도관리를 하고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하여야 함

(2) 용자취급기관은 기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함

(3) 용자취급기관은 "(2)"항에 의하여 용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용자금 잔액에 대하여 당해 용자취급기관의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4) 종전 지침에 따라 지원된 도시가스 수용가 자금중 용자대상자가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우 수용가로 부터 기일전 상환이 있는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익월 15일까지 용자취급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일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함

(5)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6) 시·도지사, 용자취급기관 및 협회는 이 지침외에 용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가스냉방 보급사업

(1)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하여야 함

(2) 용자취급기관은 기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함

(3) 용자취급기관은 "(2)"항에 의하여 용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용자금 잔액에 대하여 당해 용자취급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4) 용자취급기관은 이 지침외에 용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동력자원부 고시 제92-17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합니다.

사라진 풍속

똥떡 돌리기



옛날에는 변소에 갔다가 밭을 헐다며 밭으로 떨어져 변을 당하는 수가 있었다. 이럴때 당시의 사람들은 변소에만 살고 있는 「노일저대」라는 귀신의 심술곳은 조화로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믿었다.

옛날의 우리나라 변소는 흔히 땅을 깊게 파고 큰 항아리나 나무로 만든 쾌같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깊이가 깊고 컸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런 변을 당하면 「노일저대」 귀신이 배가 고파서 심술을 부린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변소에 떨어졌던 어린아이는 결국 죽게 된다고도 믿었다.

이럴 때 무당을 청해다가 굿을 하여 뉘을 불러들이고 「똥떡」을 만들어 먹어야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다.

「똥떡」이란 이름은 비록 지저분하지만 변소귀신 「노일저대」를 위해 귀한 쌀가루로 모두 액운을 물러가게 해달라며 정성드려 만든 떡이다.

변을 당한 어린아이는 이 「똥떡」 1백 개를 소쿠리나 바구니에 담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웃사람들에게 팔고루 나눠주게 되는데, 이 때 이 어린아이는 「똥떡! 똥떡!」하고 외쳐야만 비로소 변소에 빠져 죽게 될 그 액운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 믿었다.

「노일저대」라는 변소귀신은 것처럼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야 마을이 풀리게 되고 배가 불러 그 변소에 빠진 어린아이를 놓아주게 된다고 믿었다.

당시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픈 그 시절에는 변소에 빠진 그 봉변을 기화로 귀하고 아끼던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훈훈한 인정이 「노일저대」라는 변소귀신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여겨진다.

사업장에서 취급,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와 기능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제36조)

◦ 검사는 유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와 검사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74조]

대 상	주 기	검 사 실 시 자
프레스및전단기	매년 1회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자체검사분야의 안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당해 기계·기구취급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1급(승강기는 승강기보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자로서 해당기계·기구취급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사업장의 기계·기구 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에 한함) ●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 대행기관)
크레인	6개월 1회이상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매월 1회이상	
원심기	매년 1회이상	
용접장치	매년 1회이상	
보일러	6개월 1회이상	
압력용기	6개월 1회이상	
공기압축기	2년 1회이상	
화학설비물	2년 1회이상	
건축설비물	매년 1회이상	
국소배기장치	매년 1회이상	

※ 그러나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전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해당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자체검사원의 교육이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자체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검사 항목·방법·주기 등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및 노동부고시 제92-20호의 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규정]
- 자체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3년간 기록 보존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36조 제1항 및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기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 사업주 자체적으로 자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 제36조 제2항]

'93년도 적용

정부노임단가 평균 25% 인상

정부는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노무비의 기준인 정부노임단가를 평균 25% 인상, 현실화 했다.

'93년도 적용 정부노임단가는 본 협회가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회원사의 설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중 실지불 노임단가를 파악,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설비공사의 주요 직종인 용접공, 배관공, 위생공의 정부노임단가가 '92년 대비 평균 25.7%가 인상되어 설비공사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반영, 개선되었다.

설비공사의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물가연동제 적용 및 설계변경, 신규수주의 계약업무 등에 활용되는 '93년도 적용 정부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정부노임단가기준적용요령

1. 적용기준

- 가. 이 노임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을 정한 것임.
- 나. '92. 12. 31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동 규칙 제53조중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지수 포함)"은 '92년도 공사부문 각 직종별 정부노임단가에 시중 노임인상률(대한건설협회 조사) 10%를 가산한 가격(다만,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률이 10%미만인 직종은 제외)을 적용함.

다.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함.

라. 이 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표시한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단가임.

2. 가산적용

-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된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노임단가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나. 도서지역의 공사부문(광·전자통신, 문화재, 원자력부문 포함)은 이 노임 단가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가산·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지역은 모든 도서지역(제주도·울릉도 포함)으로 함.

3. 유추적용 및 협의

- 가. 공사부문(광·전자통신·문화재·원자력부문 포함)의 직종중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사 및 기능사직종(예 : 전기공사, 기계, 안전관리, 토양 및 토질조사등)

은 이 기준중 지적기사 및 기능사 단가를, 제조부문의 기사 및 기능사직종(예: 전기설비, 통신 등)은 이 기준중 전기기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단가에 준하여 적용할수있음. 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이 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음. 다. 이 기준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음. 4. 시행일 : 이 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II. '93년도 설비공사관련 정부노임단가 대비표

단위 : 원

직 종 명	'92노임단가	'93노임단가	인상차액	인상률(%)
특 수 비 계 공	37,100	47,400	10,300	27.8
비 계 공	30,500	40,300	9,800	32.1
보 일 리 공	28,500	34,600	6,100	21.4
배 관 공	27,300	33,500	6,200	22.7
온 들 공	26,100	31,100	5,000	19.2
위 생 공	26,300	33,200	6,900	26.2
보 온 공	25,000	30,900	5,900	23.6
도 장 공	29,000	36,600	7,600	26.2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33,000	41,900	8,900	27.0
플 랜 트 특 수 용 접 공	39,600	49,700	10,100	25.5
플 랜 트 용 접 공	35,800	43,200	7,400	20.7
플 랜 트 배 관 공	33,400	41,600	8,200	24.6
플 랜 트 제 관 공	32,800	40,300	7,500	22.9
계 장 공	26,400	33,500	7,100	26.9
특 별 인 부	26,100	30,000	3,900	14.9
보 통 인 부	19,300	21,200	1,900	9.8
기 계 설 치 공	26,200	34,000	7,800	29.8
벨 트 콘 베 어 작 업 공	22,600	28,400	5,800	25.7
함 석 공	27,300	34,000	6,700	24.5
용 접 공(일 반)	28,800	36,900	8,100	28.1
리 벳 공	30,000	36,900	6,900	23.0
닥 트 공	25,700	31,400	5,700	22.2
지 적 기 사 1 급	34,500	44,200	9,700	28.1